

의안번호	2210591
의 퇴 인	허성무 의원
회 답 일	2025. 8. 5.
추계번호	25A3010

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8조의2 신설 (에너지 교육)	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 가치의 중요성,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,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등 에너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관련 교육을 하여야 함(제1항)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(제2항)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(제3항) 1. 에너지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 2. 국민 또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콘텐츠 제작·배포 3. 에너지 관련 교육교재, 웹사이트, 영상자료 등의 기획·제작 4. 에너지 분야 교육 강사의 양성·보급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교육 관련 사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음(제4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18조의2 신설 (에너지 교육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,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등 에너지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,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
- 개정안에 따라 에너지 관련 교육을 정부가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기존 사업의 확대 또는 신규 사업의 추진으로 국가 재정지출이 증가할 가능성
 - 현재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에너지 교육 관련 사업은 없으며,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한국에너지공단이 정부 출연금¹⁾을 지원받아 에너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
 - * [참고자료]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한 공공기관 에너지 관련 교육 실시 현황
 - 다만, 개정안은 에너지 관련 교육의 범위를 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, ②에너지 분야 교육 강사의 양성·보급, ③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사업 등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실시 중인 사업 외에도 에너지 교육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며, 이 경우 해당 사업을 위한 정부의 출연금·보조금 예산이 증가하는 등 국가 재정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
- 개정안에 따른 소요 비용은 기존 사업의 예산 증액이나 신규 사업의 예산 편성 규모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, 해당 규정을 근거로 확대 또는 신규 추진될 사업과 정부의 재원 투입 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재정지출 증가분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확대 또는 신규 추진될 사업의 대상자 수, 추진방식 및 필요 인력 등 구체적인 내용과 정부의 재원 투입 계획을 바탕으로 추계에 필요한 사항을 가정하여야 함
 - 그러나 개정안에 따른 에너지 관련 교육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재정 지원

1) 사업명: 전력산업홍보(전력산업기반기금, 7401-301), 한국에너지공단지원(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, 5139-320)

기준과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며, 사업의 내용과 예산 규모가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재량지출성 사업의 특성상 지출 수준도 국가재정 여건 및 정부의 재원 투입 의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현 시점에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산업통상자원부는 교육사업 위탁기관과 교육 내용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어 현 시점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 편성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

-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에너지 관련 교육 사업을 실시하는 데 따른 재정지출 증가액을 추계할 수 없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김효진	권아영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진	02-6788-4654	hjkim1991@na.go.kr

[참고자료]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한 공공기관 에너지 관련 교육 실시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-내역사업 (회계, 코드)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2025년 예산 ¹⁾
전력산업홍보 (전력산업기반기금, 7401-301) -에너지정보소통	1. 에너지 정보관 운영(진로체험교육 포함): 319백만원 ○(내용) 다목적 활용가능 상설정보관 운영 및 진로체험교육 시행 - 상설전시존, 미디어아트존, 기획전시존으로 구성, 에너지원별 발전원리 등 체험 - 차세대 온·오프라인 진로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○(산출내역) - 정보관 운영비: 19.1백만원×12개월=229백만원 - 진로체험교육: 3,450원×26,000명=90백만원 2. 에너지 교육자료 개발·보급: 90백만원 ○(내용) 에너지 정보 기반 교육자료 개발, 보급·활용으로 에너지 소양 제고 - 교사연구회 구축·운영 - 에너지 소양 교육 프로그램 연구·개발 지원 ○(산출내역) - 교사연구회 운영: 학생 교육자료개발 2.85백만원×20개 단체=57백만원 - e러닝 강좌개설 및 관리: 교육콘텐츠 제작 25백만원+교육콘텐츠 기사관리 8백만원 3. 교원 직무연수: 110백만원 ○(내용) 교사의 에너지 소양 제고를 위한 맞춤형 연수프로그램 운영 - 에너지 특수 분야 연수 - 교원 전용 사이트(교육연수원)을 통한 온라인 직무연수 ○(산출내역) - 특수분야(에너지) 연수: 13.3백만원×3회=40백만원 - 온라인 직무연수: 18천원×3,900명=70백만원 4. 사업관리비: 382백만원 - 인건비: 65,6백만원(재단 1인당 평균보수)×5명(교육팀 현원)=328백만원 - 운영비: 328백만원×16.5%(행안부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)=54백만원	901
한국에너지공단지원 (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, 5139-320)	1. 미래세대 에너지교육: 368백만원 ○각급 초·중·고 학생 및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체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. 에너지 전문교육: 394백만원 ○공무원, 공공기관 및 민간 건물·산업체 에너지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·기후변화 관련 교육과정 운영	762

주: 1) 해당 사업 예산 중 에너지 교육과 관련된 예산만 발췌한 것임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